

Deloitte.



2025.01 | 제4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카드뉴스

: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리더 메시지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4호는
**KOSPI200 기업의 2024년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
'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등'의
하반기 주요규제동향을 담았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FY2022-FY2023 KOSPI200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및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시사점 제공

개요

분석 대상 ☒ KOSPI200 상장법인

분석 기간 ☒ 2022-2023 회계연도

분석 항목 ☒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에 대한 기업 자체평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 12번 항목)

☒ 상기 기업 자체평가 대비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현황

분석 자료 ☒ 2024년 기업지배기구조보고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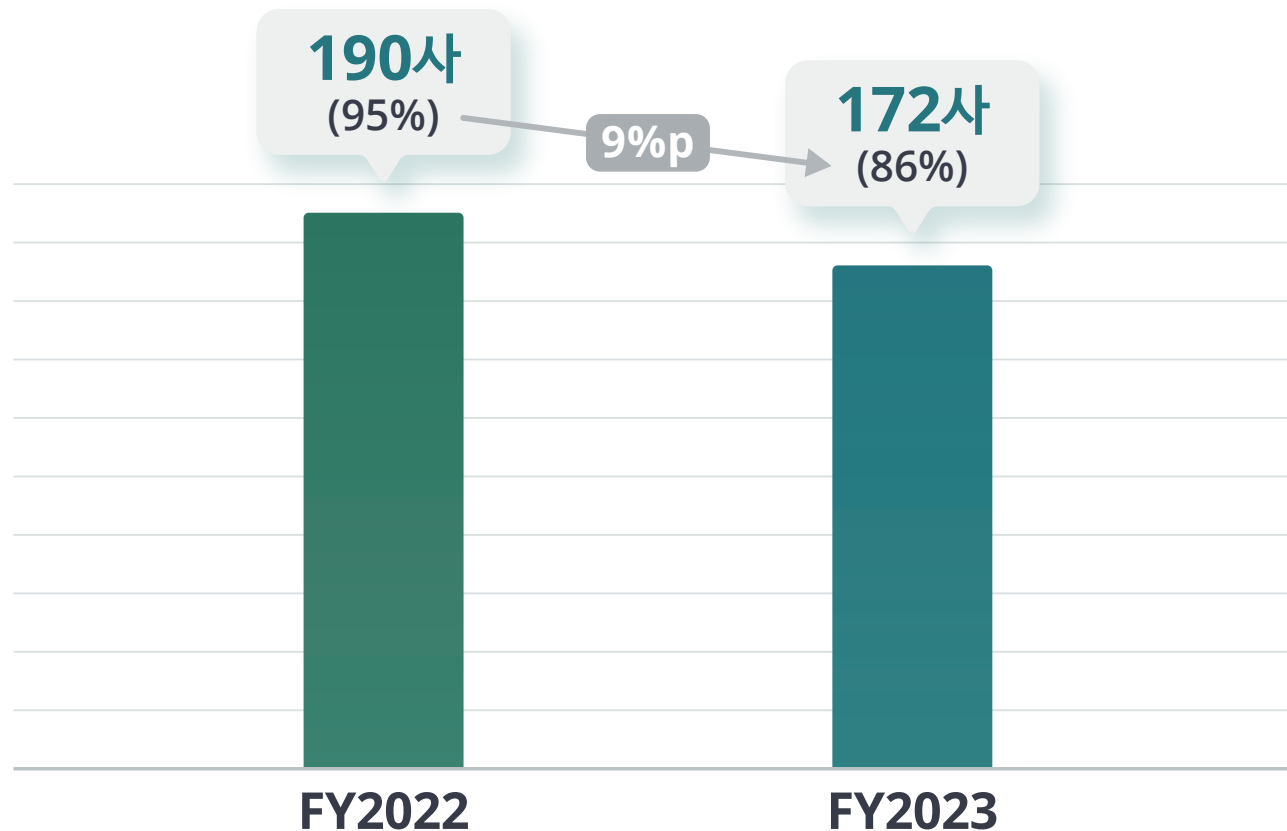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사업보고서 및 동 보고서 부속서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1. 내부감사부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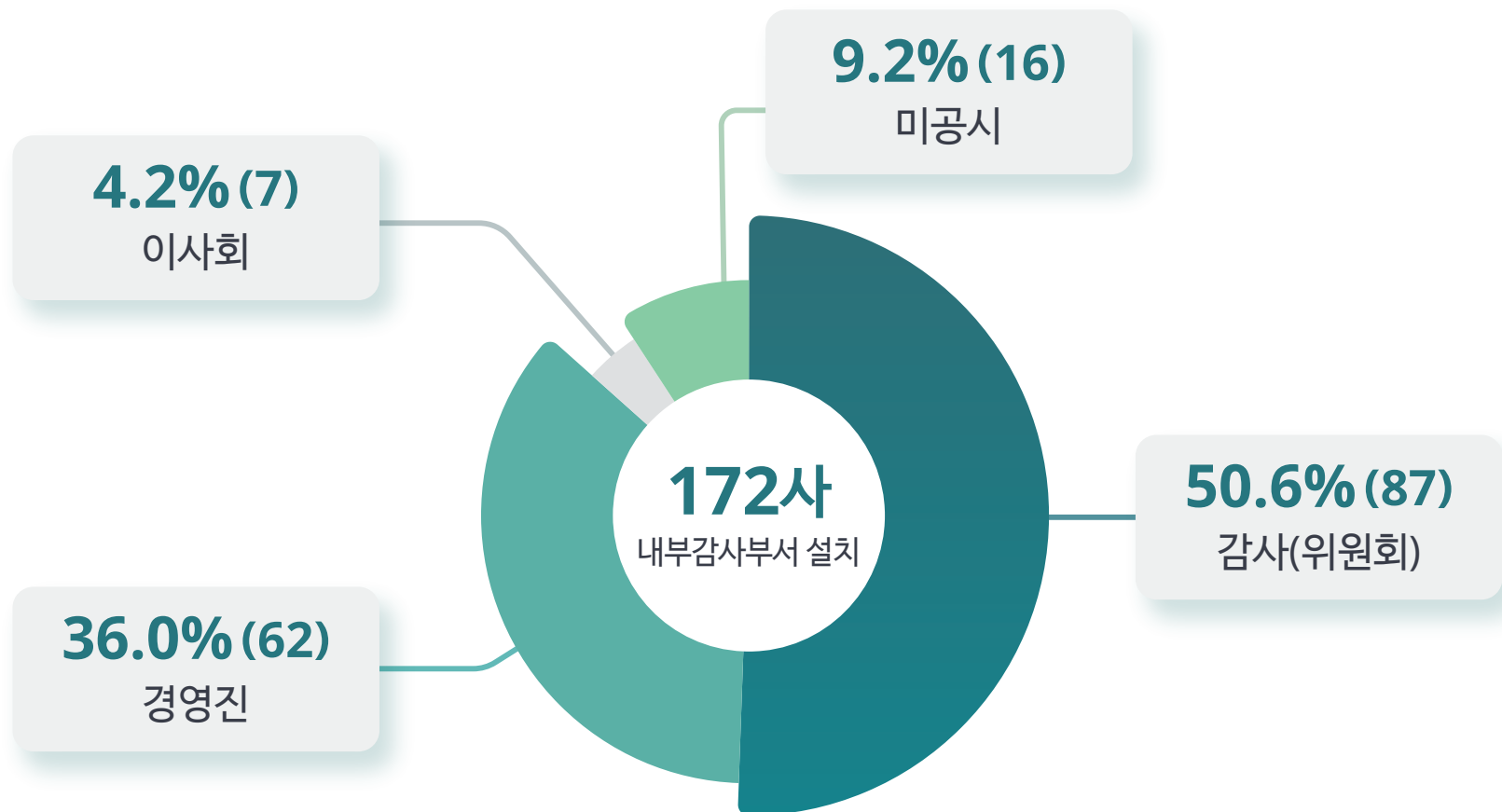
FY2023 기준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172사(86%)로
전기대비(190사) 9%p 감소



- 내부감사부서의 수가 감소했다기보다는 FY2023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표준화된 서식으로 적용되면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여부'를 O, X로 표시하도록 되어 **기업의 자체평가가 반영된 수치일 것으로 예상**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2.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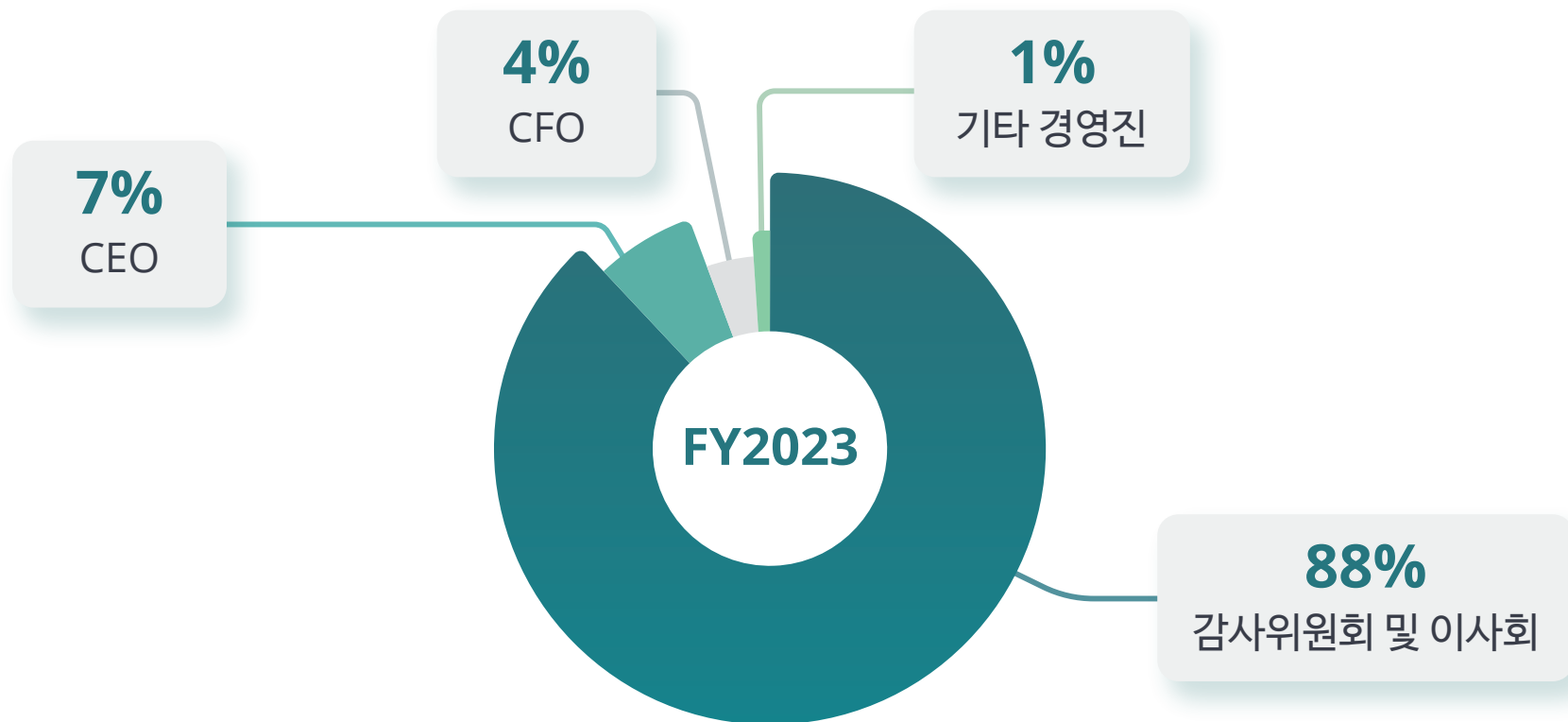
독립성 확보 노력을 이행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추세



-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72사(86%)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을 보유한 경우는 87사(50.6%)로 전기대비(81사) 8%p 증가
-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 직속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62사(36.0%)로 전기 대비(73사) 2.4%p 감소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2.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 글로벌



북미의 경우 88%는 내부감사부서의 기능적 보고라인을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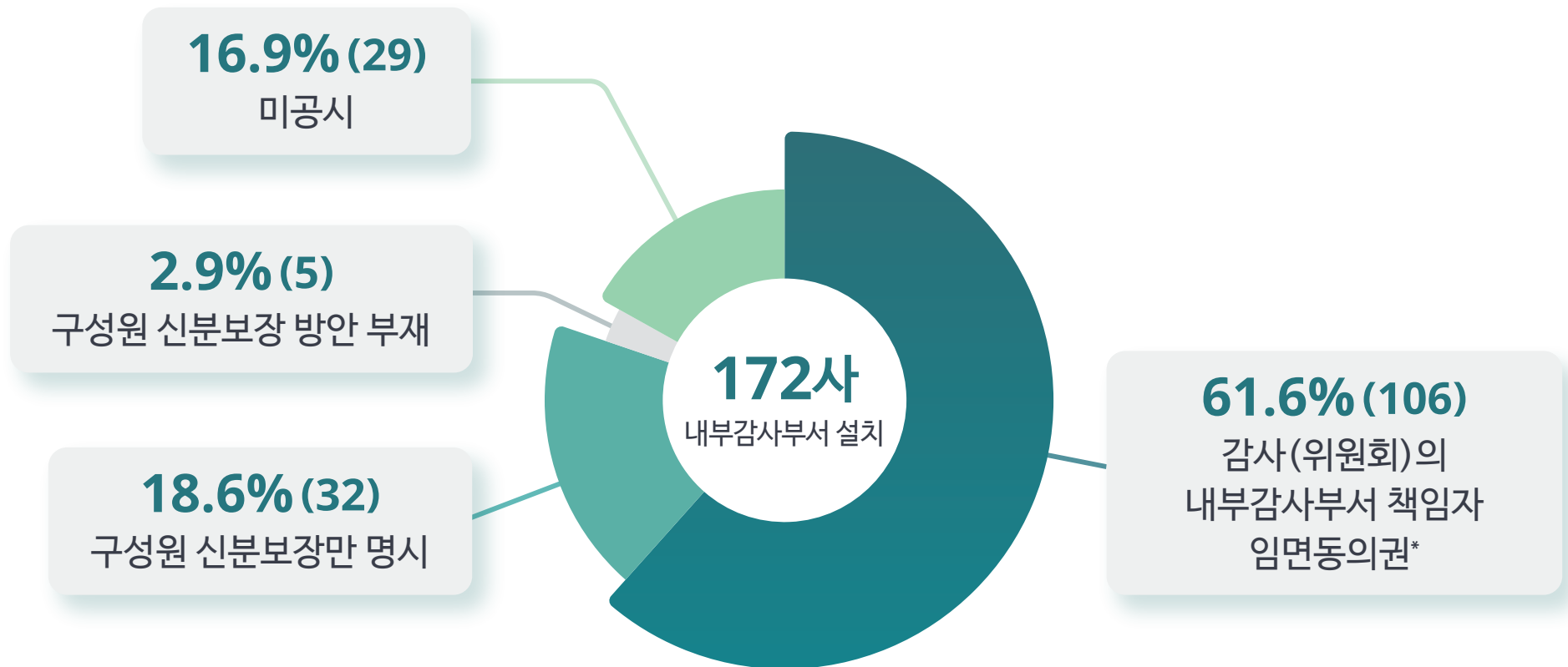


- IIA 국제내부감사표준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중 보고라인(dual reporting line) 권고
- 기능적 보고: 연간감사계획, 내부감사 결과, CAE 평가·보상 등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독립성 강화
- 행정적 보고: 경비승인, 내부정책·절차, 인사 행정처리 등은 경영진에 보고하여 일상적 운영 촉진

*Internal Audit Foundation, 「2024 North American Pulse of Internal Audit」, 2024, 북미 내부감사인 422명 대상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3.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확보하는 경향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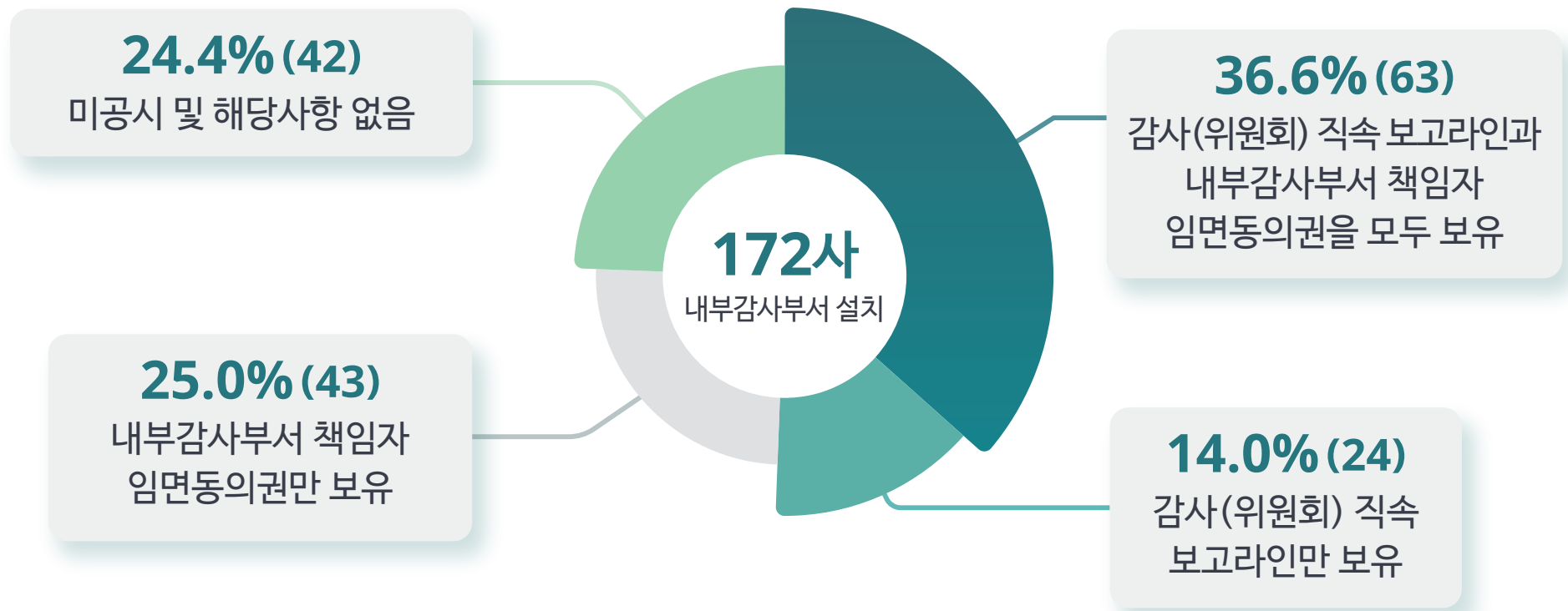


-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72사 중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갖춘 기업은 106사(61.6%)로 전기대비 4.2%p 상승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 시 동의 또는 협의 권한 보유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4.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모두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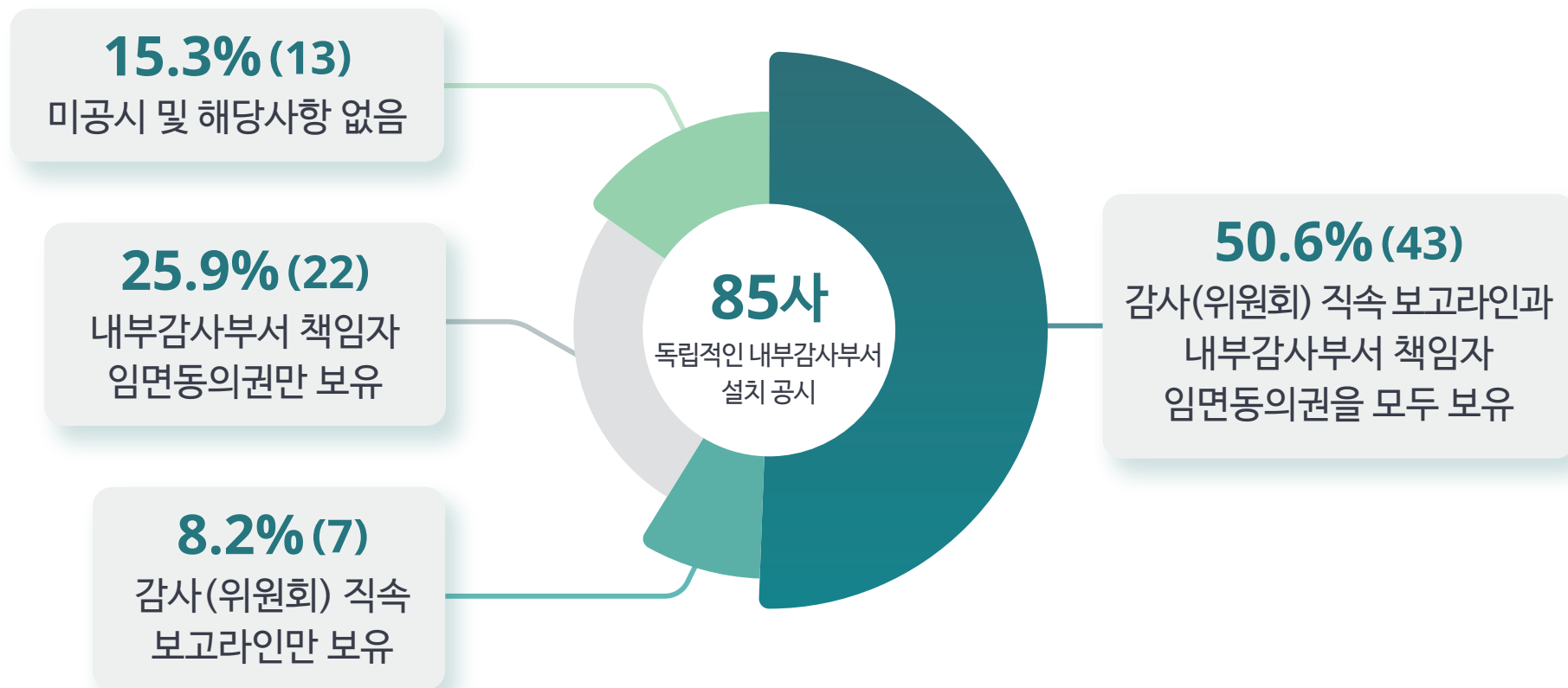
여전히 국내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72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갖춘 곳은 63사(36.6%)에 불과
- 전기대비(61사) 4.5%p 증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이 일부 개선됨을 의미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현황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에 대한 회사의 자체평가 대비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수준은 미비



- FY2023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했다고 공시한 85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절반 수준(43사, 50.6%)에 불과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6.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손상 체크리스트

IIA의 국제내부감사표준은 최고감사책임자(CAE)가 최소 연 1회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평가하고 독립성이 손상되었을 수 있는 사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 예시 - 체크리스트

내용	
• CAE와 감사(위원회)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경우	☒
• 경영진이 감사(위원회)가 이미 승인하여 규정에 명시된 내부감사 범위를 제한하려는 경우	☒
• 경영진이 내부감사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경우	☒
• 경영진이 내부감사인에게 발견사항을 보류·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
• 내부감사부서 예산이 현장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경우	☒
• CAE가 감독하거나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 부문에서 내부감사부서가 검증업무를 수행하거나 CAE가 이를 감독하는 경우	☒
• 내부감사부서가 관리적으로 CAE의 보고를 받는 고위임원(CEO 제외)이 관리하는 활동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하거나, CAE가 이를 감독하는 경우	☒

*IIA, 「국제내부감사표준」, 7.1 조직의 독립성, 2024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

주주총회 제도는 주주권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주주 참여와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는 문제 개선해야

2006년 ACGA*의 아시아 10개국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스템 평가 결과,
한국은 8위로 하위권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2024년 한국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과 정보 부족

-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한 (2주 전)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검토 시간 부족 (1주 전 공시)
- 이사 보수 세부 정보 미공시
- 외국인 투자자의 복잡한 의결권 행사 절차
- 주주총회 공시 영문 미제공으로 정보 접근성 저하
- 3월말 집중개최 현상 여전
- 주주총회 참석 서류 요구 사항 엄격
- 주주총회 질의·응답 시간 부족, 집중투표 불가, 표결결과 미공시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

	현행	개선방안
 주주총회 소집	- 주주총회 2주 전 통지 - 정기주주총회 3월 말 집중개최	-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한 4주로 연장 - 배당기준일 1월 이후로 변경 - 일정기간내 주주총회 개최 회사 수 제한
 사전 정보 제공	-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1주 전 공시 - 이사보수 관련 세부정보 미공시	-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3주 전 공시 - 이사보수 관련 정보 확대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 외국인 주주의 짧은 사전투표 기간 - 외국인 주주의 전자투표 접근성	- 전자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 외국인투자자의 주주인증 수단 개선
 주주총회 진행	-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진행 - 사외이사 불참 - 질의/응답 시간 부족 - 영어통역 미제공, 통역자 동반 불가	- 주주총회 의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지정 - 사외이사 참석 의무화 - 질의/응답 시간 보장 - 주주 질문권, 발언권 명문화
 표결·사후 공시	- 집중투표 정관으로 배제 가능 - 투표시스템 문제로 집중투표 불가 - 표결결과 미공시	- 집중투표 활성화 및 투표시스템 개선 - 주주총회 직후 표결결과 공시 의무화 (영문 포함)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기업 Check Point



- ✔ 감사전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
별도재무제표(정기 주총 개최 6주전), 연결재무제표(정기 주총 개최 4주전)
- ✔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
- ✔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① 수익인식 회계처리,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 ③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 ✔ 회계오류 자진 정정시 조치 감경
- ✔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외부감사인 Check Point



- ✔ 기업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
- ✔ 기업의 자금부정 가능성에 유의
- ✔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 ✔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자세한 내용은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4호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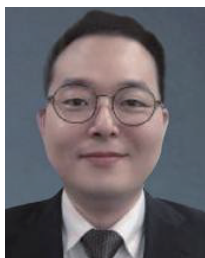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 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김한석 Partne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hansuki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